



「2023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장학금 신청 안내」

2023. 2. 8. (수)

경기운영부

(스포츠교류팀)

목 차

1.	추진목적	1
2.	장학생 모집개요	2
3.	장학생 세부 모집계획	2~5
4.	장학생 선발방법	5~7
5.	제출서류 안내	8~10
	별첨 1. 2023년 중위소득,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	11

2023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장학금 신청 안내

서울시 우수한 실력을 갖춘 저소득층 초·중·고 학생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,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리시 체육인재 육성· 발굴과, 장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

1 추진목적

□ 세부내용

- 서울시 소속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초·중·고 학생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,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리시의 체육복지를 증진시키고, 미래의 체육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함
- 오 우수한 실력을 갖춘 저소득 학생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,운동선수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
- 장학금 지원을 통해, 서울시 학생 선수들의 소속감을 제고시키고,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건강하고 건전한 심신 육성에 기여

2 장학생 모집개요

□ 세부개요

ㅇ 장 학 명 : 2023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

ㅇ 지원기간 : 2023. 3. ~ 12월

o 지원대상: 서울시 저소득층 초·중·고 학생 선수

※ 대한체육회 등록 선수에 한함

ㅇ 내 용 : 저소득층 학생 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

ㅇ 선발규모: 123명 내외

o 선발방법 : 본회 학교체육위원회 심의·선정

※ 신청자 규모에 따라 학교체육(소)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음.

o 지급방법: `23. 3. ~ 12월 매월 20일경 대상자(학생) 계좌로 온라인 송금

3 장학생 세부 모집계획

□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장학금 지원

ㅇ 장 학 명 : 2023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장학금

ㅇ 지원기간 : 2023. 3. ~ 12월(10개월 간)

ㅇ 선발규모

_ H	선정인원				
丁 世	총 계	초	중	고	
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장학금	123명	23명	45명	55명	

※ 상기 인원은 접수자 지원율(초·중·고) 및 학교체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ㅇ 연간 수혜금액 : 초등(2,000천원), 중등(3,000천원), 고등(4,000천원)

- 초등 : 금200,000원×23명×10개월=금50,000,000원('23. 3. ~ 12월)

- 중등 : 금300,000원×45명×10개월=금105,000,000원('23. 3. ~ 12월)

- 고등 : 금400,000원×55명×10개월=금280,000,000원('23. 3. ~ 12월)

□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
○ 신청기간 : 2023. 2. 9.(수) ~ 16.(목), 12:00까지 * 제출기한 엄수

※ 개인 및 각 학교는 해당 市회원종목단체 장학생 신청자 서류취합 및 본회 제출기간을 고려하여, `23. 2. 15.(수)까지 제출 요망

o 제출방법 : 전자문서 공문 제출(*LDAP 수신처 : 서울특별시체육회)

ㅇ 추천방법 : 해당 市회원종목단체장 추천

o 제출경로 : 장학생 신청자 또는 학교 ➡ 市회원종목단체(* 취합 후) ➡ 본회

※ <u>장학생 신청자와 각 신청 학교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로 직접 접수는 불가하며,</u> 반드시 해당 市회원종목단체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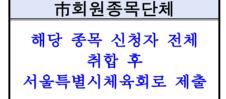
ㅇ 제출 경로 예시

① 장학생(축구 종목) 개인 신청자 ➡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신청서류 제출

② 학교(농구 종목) 신청자 ➡ 서울특별시농구협회 신청서류 제출

ㅇ 서류 제출 경로

신청자
신청자, 또는 학교
➡ 해당 종목
市회원종목단체로
신청서 제출



최종서류 검토 市회원종목단체 신청자 서류 검토 및 평가

□ 지원자격(*필수)

- ① 신청대상: 서울시 소속 초·중고 저소득층 및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 선수
- ② 해당 종목 선수 등록기간 1년 경과자로서, 서울시 대표로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
- ③ 전국규모대회<* 2022년 전국(소년, 동계)체육대회, 기타 중앙경기단체 전국규모대회 등>, 서울특별시장기대회 등 참가 이력이 있는 선수
- ④ 가정 환경 관련 해당 요건 충족자

연번	구분	연번	구분
1	기초생활수급자	8	새터민가정
2	차상위계층	9	다자녀가정(3자녀 이상)
3	한부모가정	10	조부모 부양 가정
4	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(NEIS) 교육비 지원 대상자	11	조부모 가정
5	장애인가정	12	긴급위기 가정 〈보호자 수감, 파산, 개인회생〉
6	중증질환자 가정	13	임대아파트 거주 가정
7	다문화가정	14	학업 성적 우수자

□ 선발제한

- ① 학교폭력 가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
- ①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자
- ② 형사처벌(처분)을 받은 자
- ③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1항 제4호~제6호, 제8호~제9호에 해당하는 자
- ② 2023년 2월 고교 졸업(예정)자
- ③ 형제, 자매 선수(1가구, 1명 지원)
- ④ 서울시 거주자이나 타 시·도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 인자

□ 장학금 지원 중단

- ① 3개월 이상 휴학 등의 사유로 운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
- ② 학생 선수로서, 선수 활동을 하지 않을 때
- ③ 법정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
- ④ 장학금 지원 기간 중 학교폭력 가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
- ①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자
- ② 형사처벌(처분)을 받은 자
- ③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1항 제4호~제6호, 제8호~제9호에 해당하는 자
- ⑤ 기정환경 및 수상실적 허위 기재 혹은 무효 대회<전국규모가 이닌 대회 등>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실적을 제출하여,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확인 즉시 장학생 선정을 취소하고 장학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며, 추후 2년 동안 본회 각종 장학금 지원 사업 추천 대상에서 제외

「체육인 복지법」제23조<장학금 반환 의무 사유>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

- ⑥ 장학금 지원 기간 중 서울 이외의 타시도로 전학할 경우
- ⑦ 장학생으로서, 선수 생활을 불성실하게 하거나, 운동 의지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

□ 추진일정

세부일정	추진내용	추진대상
'23. 2. 9.(목)	모집안내 및 신청 협조 요청	본회
'23. 2. 9.(목) ~ 16.(목), 12:00	서류접수 마감	<mark>신청자 ➡</mark> 본회 市회원종목단체
'23. 2. 16.(목)	서류취합 및 제출	본회 市 회원종목단체 ☞ 본회
'23. 2. 16.(목) ~ 17.(금)	제출서류 검토	본회
'23. 2. 21.(화) 예정	학교체육위원회 개최 및 장학생 심의·선정	본회
'23. 2. 28.(화) 예정	장학생 대상자 발표	市교육청, 市회원종목단체 공문 안내
'23. 3. ~ 12월	월별 장학금 지급	본회 ➡ 장학생 선정자(학생) 계좌 입금 ※ 매월 20일 지급
'23. 12월	장학생 대상 경기실적 증명서 취합 및 결과보고	본회

장학생 선발방법

□ 선발방법

o 선발방법 : 본회 학교체육위원회 심의·선발(`23. 2. 21. 예정)

ㅇ 평가방법 : 신청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정량적 평가로 환산·채점

ㅇ 종합평가 점수(가정환경, 경기실적) 고득점자 차순위별 선발

□ 평가기준

① 가정환경 관련<최대 : 88점>

(단위 : 점)

연번		내용	<u> </u>	점수	구비서류
1	기초생활 생계급여<0.8점> 수급자 의료급여<0.6점> 40점> 주거급여<0.4점>		기본〈38점〉 생계급여〈0.8점〉 의료급여〈0.6점〉 주거급여〈0.4점〉 교육급여〈0.2점〉	38점 0.8점 0.6점 0.4점 0.2점	①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<정부24> * 학생명의 발급
2	<1개> 최고	차상위계층	<35점>	35점	①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〈정부24, 국민건강보험공단〉 * 학생명의 발급
3	점수 부여	한부모가정	<30점>	30점	①한부모가족 증명서 〈정부24〉* 학생명의 발급
4		교육비 지원	년 대상자<25점>	25점	①나이스(NEIS) 교육비 지원 확인서 〈수강료,급식비 등※소속 학교 발급〉
5		장애인 가격	8	4점	① 장애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
6		중증질환자	가정	4점	① 장애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
7		다문화 가정	3	4점	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국적취득사실증명서 ③ 외국인등록증
8		새터민(북한	·이탈자) 가정	4점	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
9	해당	다자녀 가격	덩(3자녀 이상)	4점	① 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② 주민등록등본(학생명의)
10	건별	조부모 부영	· 가정	4점	① 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② 주민등록등본(학생명의)
11	점수 부여	조부모 가격		4점	① 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② 주민등록등본(학생명의)
		カユ	1) 보호자 수감	4점	① 수용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
12		진급 - 위기 가정 -	2) 파산신청	4점	① 파산 관련 법원 인가 결정문 ② 가족관계증명서
		/1/8	3) 개인회생 가정	4점	① 개인회생 관련 법원 인가 결정문 ② 가족관계증명서
13		임대아파트 거주 또는 5,000만원 이하 월세 거주 가정		4점	 3 공공임대주택 계약서 월세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
14		학업 성적	우수자	4점	① 전 학기 성적증명서

② 경기실적 관련<최대: 20점>

(단위 : 점)

구분	전국규모대회			서울시장기대회			경기력 가산점	
		1위	2위	3위	1위	2위	3위	득점왕, 최우수선수, MVP 등
점=	수	10	9	8	7	6	5	3
증병	빙	중앙경기단체			市호	원종목1	단체	중앙경기단체 경기실적증명서
서	류	경기실적증명서			경기	실적증	명서	市회원종목단체 경기실적증명서

- ※ 경기실적은 `22.1.1. ~ `23.2.16.까지 개최되고, 경기실적 증빙이 가능한 대회에 한함.
- ※ 전국대회규모, 서울시장기대회 각 해당하는 가장 높은 점수 분야 1개씩만 부여
- 예시1) 전국규모대회 1위, 2위, 3위 수상자(10점 부여)
- 예시2) 서울시장기대회 1위, 2위, 3위 수상자(7점 부여)
- 예시3) 전국규모대회 1위, 2위, 3위, 서울시장기대회 1위, 2위, 3위 수상자(17점 부여)
- 예시4) 전국규모대회 2위, 3위, 서울시장기대회 2위, 3위, 경기력 기산점 해당자(18점 부여)

ㅇ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

- ①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➡ 의료 ➡ 주거 ➡ 교육급여) ➡ ② 차상위계층 ➡
- ③ 한부모가정 ➡ ④ 경기실적 우수 선수<4순위, 하단 선발 순서 참조> ➡
- ⑤ 저학년(생년월일) ➡ ⑥ 학교운동부 ➡ ⑦ 클럽운동부
- ※ 4순위 : 대회 실적 우수 학생 선수<4순위 내에서, 아래 순서에 따라 추천>
 - ① 국내 전국규모대회 1위를 가장 많이 한 학생 선수
 - ② 국내 전국규모대회 2위를 가장 많이 한 학생 선수
 - ③ 국내 전국규모대회 3위를 가장 많이 한 학생 선수
 - ④ 서울시장기대회 1위를 가장 많이 한 학생 선수
 - ⑤ 서울시장기대회 2위를 가장 많이 한 학생 선수
 - ⑥ 서울시장기대회 3위를 가장 많이 한 학생 선수
 - ※ ① ~ ③ 항목 내에서 동점자 발생 시, 전국체육대회(동계 포함) 또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 선수 우선 선발

5 제출서류 안내

□ 제출서류 구분

개인 제출서류	市회원종목단체 제출서류
<신청자 ➡ 종목별 市회원종목단체>	<市회원종목단체 ➡ 서울특별시체육회>
[필수 제출서류] ① 추천서〈*붙임1〉 ② 재학증명서 또는 배정확인서 ③ 선수등록 확인서〈중앙경기단체 발행〉 * 최근 1개월 이내 ④ 경기실적 증명서〈중앙경기단체 발행〉 * 최근 1개월 이내 ⑤ 학생선수 명의 통장사본 * 부모 및 타인 통장, 적금통장, 청약통장, 장기 미사용 정지 통장, 증권계좌 등 제출 불가 * 입금한도 및 거래 중지 여부 확인 후 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〈*붙임6〉 [해당자 제출서류] ⑦ ~ ⑳ 해당자 서류 제출〈*붙임7 참조〉	① ~ ② "개인 제출서류 동일" * 장학생 추천명단(* 공문 붙임3 엑셀 서식) * 해당 협회 장학생 신청자 서류 취합 후 본회로 제출

□ 필수 제출서류

- ①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장학생 신청서 1부<*붙임1 참조>
- ② 재학증명서 또는 배정확인서(입학 예정 증명서) 1부<*붙임2 참조>
- ③ 2023년도 선수등록 확인서(해당 중앙경기단체) 1부<*붙임3 참조> ※ '23년도 발급 불가 시. '22년도 자료 제출 후, 장학생 선정 시 '23년 자료 제출
- ④ 2022년도 경기실적 증명서(해당 중앙경기단체) 1부<*붙임4 참조>
- ⑤ 학생 명의 통장사본 1부<*붙임5 참조>

<지급가능 은행>

기업은행, 국민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SC제일은행, 한국씨티은행, Sh수협은행, NH농협은행, 단위농협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광주은행, 제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, 새마을금고, 신협, 우체국, 상호저축은행, 산업은행, 카카오뱅크

- ※ 부모 및 타인 계좌 불가
- ※ 예금, 적금, 청약, 증권사 계좌 불가
- ※ 입금한도 초과, 거래 중지 계좌 등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 요망
-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<*붙임6 참조>

□ 해당자 제출서류

연번	₹	·분	증빙서류		
7	기호세하스그기.		①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<정부24>		
,	기초생활수급자		* 학생 명의 발급		
			①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		
8	차상위계층		〈정부24, 국민건강보험공단〉		
			* 학생명의 발급		
	첫 번 ㅁ 키 기		①한부모가족 증명서		
9	한부모가정		〈정부24〉* 학생명의 발급		
10	교육부 교육행정기	정보시스템(NEIS)	①나이스(NEIS) 교육비 지원 확인서		
10	교육비 지원 대상	-자	〈수강료,급식비 등〉〈소속 학교 발급〉		
11	장애인가정		① 장애인증명서		
	경 에 인가경		② 가족관계증명서		
12	중증질환자 가정		① 장애인증명서		
12	8 8 2 2 2 7 7 8		② 가족관계증명서		
			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		
13	다문화가정		② 국적취득사실증명서		
			③ 외국인등록증		
14	새터민가정		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		
	게 다 친기 (8	② 가족관계증명서			
15	 다자녀가정(3자녀	이사)	① 가족관계증명서(*학생명의)		
		-187	② 주민등록등본(*학생명의)		
16	 조부모 부양 가정		① 가족관계증명서(*학생명의)		
	<u> </u>	조구로 구장 가정 ② 주민등록등본(*			
17	조부모 가정		① 가족관계증명서(*학생명의)		
	<u> </u>		② 주민등록등본(*학생명의)		
18-1		 보호자 수감	① 수용증명서		
			② 가족관계증명서		
18-2	 긴급위기 가정	파산	① 파산 관련 법원 인가 결정문		
			② 가족관계증명서		
18-3	 개인회생		① 개인회생 관련 법원 인가 결정문		
		,, 2 , 0	② 가족관계증명서		
	 임대아파트 거주	또는 5.000만원	① 공공임대주택 계약서		
19	이하 월세 거주 <i> </i>		② 월세 계약서		
			③ 가족관계증명서		
20	학업 성적 우수자	-	① 전 학기 성적증명서		

□ 서류제출 유의사항

- ㅇ 필수 제출서류(①~⑥) 미제출 시 선정 제외
- o 해당자 제출서류(⑦~②) 미제출 시 관련 내용 불인정
- 장학생 신청자 제출서류는 개인별 PDF 문서(①~②번, * 반드시 번호순)로 1개의 파일로 저장 후, 전체 추천 대상자 폴더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 ※ 파일 스캔 순서는 반드시 번호순으로 작성
 - 예) : 1.초_한국초_5학년_축구_홍길동_남 * 엑셀 순서도 동일하게 기재
 - ※ 개인 제출서류 전체 압축폴더명 : 추천단체명_추천인원수 예시) ○○시검도회_3명
- o 개인 및 클럽으로 소속된 선수들은 「붙임9」연락처 및 이메일을 참고하여, 해당 종목 市회원종목단체로 신청서 제출 예정
- 市회원종목단체는 신청자 서류접수 후 <u>본회 공문 발송 용량 초과 시</u>
 <u>제출서류는 담당자 이메일<athleticman@seoulsports.or.kr>로 별도 제출</u>
 * 제출 후 담당자 유선(☎02-490-2746) 확인을 통해 정상 접수 필히 확인
- ㅇ 공문 발송 시 보안결재 및 비공개(6호) 처리<붙임12> 참조
- ㅇ 장학생 추천명단 작성 유의사항
 - 기초정보, 입상실적 등을 정확히 기재
 - 대회실적은 2022.1.1.부터 추천마감일<2023.2.16.> 내 개최하여, 경기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대회만 인정하며, 대회명 앞에 반드시 개최 연도를 기재
 - * 예)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[○], 제103회 전국체육대회[×]
 - 대회실적 기재 시, 개최연도(내림차순) 순으로 기재
 - 추천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"해당 없음" 으로 간주
- ㅇ 회원종목단체 미등록 학생 및 미승인 학생 선수는 본 장학생 대상에서 제외
- o 예산 및 추천대상자 현황을 고려하여 최종 장학생 선정 인원은 기존 계획과 상이할 수 있음
- ㅇ 장학금 대리수령(대리인 계좌) 불가
- o 선수등록 확인서 2023년 발행 불가 시, 2022년도 선수등록 확인서, 제출 후, 추후 2023년도 자료 제출

별 첨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,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
□ 2023년 기준 중위소득

(단위 : 원)

가구규모 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	8,107,515

※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

□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
(단위 : 원)

가구규모	가구규모							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	
생계급여 (기준중위소득 30%)	623,368	1,036,846	1,330,445	1,620,289	1,899,206	2,168,394	2,432,255	
의료급여 (기준중위소득 40%)	831,157	1,382,462	1,773,927	2,160,386	2,532,275	2,891,193	3,243,006	
주거급여 (기준중위소득 47%)	976,609	1,624,393	2,084,364	2,538,453	2,975,423	3,397,151	3,810,532	
교육급여 (기준중위소득 50%)	1,038,946	1,728,077	2,217,408	2,700,482	3,165,344	3,613,991	4,053,758	

- ※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%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
- ※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: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-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: 2,696,116원 = 2,432,255원(7인기준) + 263,861원(7인기준-6인기준)